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977
----------	-----

제출년월일 : 2006. 5.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우수농수산물 생산으로 농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으로부터 우리농수산물 자생력확보와 국제경쟁력제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바.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사. 기금의 용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아. 기금의 용자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자.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6-29호(2006. 1. 13. ~ 2006. 2. 1.)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17조, 제39조
- 수산업법 제87조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산업법」 제2조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수산업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수산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8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위한 용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

1.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물 개발사업
4.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수산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9.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은 목표액 달성 이후부터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매년 기금의 1/4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
2. 생산자단체, 생산자조직 등

③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용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용자금의 한도) 기금의 용자 대상별 용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 : 5천만원 시설자금(운영자금은 3천만원)
2.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 : 1억원 시설자금(운영자금은 5천만원)

제13조(용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용자대상사업에 대한 용자금의 지원시기, 용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용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5조(상환기간의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용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용자의 금지) ①기금을 용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용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4.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용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5. 용자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점검 등)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 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 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용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 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 주사가 된다.

⑤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2. 기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및 감면 의결
3. 기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에 관한 조사·심의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⑦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용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